

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방공무원
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5 월 9 일

여 수 시 장

2023.5.9



여수시 조례 제1876호

붙임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“제4조(운임 및 숙박비 지급)”을 “제4조(여비의 지급)”으로, “운임과 숙박비는”을 “여비는”으로 한다.

제5조 4호 “「공용차량관리규정」 제4조 및 별표 1”를 “「공용차량관리규정」 제4조 및 별표”로 한다.

[별표 2] 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 2]

국내 여비 지급표(제4조 관련)

현 행						개정안							
(단위 : 원)						(단위 : 원)							
구분	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임	숙박비 (1박당)	구분	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임	일비 (1일당)	숙박비 (1박당)	식비 (1일당)
제 1 호	실비 (특실)	실비 (1등급)	실비	실비	실비	제 1 호	실비 (특실)	실비 (1등급)	실비	실비	25,000	실비	25,000
제 2 호	실비 (일반실)	실비 (2등급)	실비	실비	실비 (상한액: 서울특별시 <u>70,000,</u> 광역시 <u>60,000,</u> 그 밖의 지역은 <u>50,000)</u>	제 2 호	실비 (일반실)	실비 (2등급)	실비	실비	25,000	실비 (상한액: 서울특 별시 <u>100,000,</u> 광역시 <u>80,000,</u> 그 밖의 지역은 <u>70,000)</u>	25,000

비고

-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"공무원여비규정"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- 1의2.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,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.
-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-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 요금으로 지급한다.

비고

(현행과 같음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) 별표 2의 규정은 2023년 3월 2일 국내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